

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886호

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 
따른 대상자 및 유(가)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 
추가하고,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 
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수수료  
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수수료  
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 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11. 22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